

##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4조(기능)중 “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설계용역등의”를 “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~ ② (생 략)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총무사 회국장, 산업건설국장이 되고, 위 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, 전문가,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제3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. . . . . · 산업건설국장, 기획담당관이 되고 · . . . . . · . . . . .	제3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. . . . . · 산업건설국장, 기획담당관이 되고 · . . . . . · . . . . . · . . . . . · . . . . .
제4조(기능)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기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4조(기능)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공사설계용역등의 . . . . .	제4조(기능)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등의 . . . . .
제7조(간사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시기 각 1인을 둔다. ②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며,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.	제7조(간사등) ① . . . . . · . . . . . 간사 1인을 둔 다. ②간사는 건설기획담당이 된다.	제7조(간사등) ① . . . . . · . . . . . 간사 1인을 둔 다. ②간사는 건설기획담당이 된다.